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10. 2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이병순)

가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,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6조의2)

-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변경(5년 연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,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6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“2023년 12월 31일”에서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5년 연장함.

○ 검토 결과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 및 본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,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,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6조의2)

-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변경(5년 연장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8. 31. ~ 9. 20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2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